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변액보험 보험계약대출 이용방법 변경특약

2. 적용대상 계약

이 특약은 이미 체결된 변액보험계약(이하 “주계약” 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료가 자동대출납입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보험계약대출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 관련 내용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 지급방식” 과 “일반계정 지급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나. 계약자가 특별계정 지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은 주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 계약자가 일반계정 지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은 이 특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4. 일반계정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주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 일반계정 지급방식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일반계정에서 대출신청일에 지급된다. 회사가 해당 보험계약대출금액을 지급

하더라도 특별계정에서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이 때, 공시이율은 주계약의 체결시점에 판매 중인 동일한 상품군(저축성,연금,보장성)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주계약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종목이 전환된 경우는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전환된 계약에 해당하는 상품군의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라. 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마. 회사는 주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바.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5. 보험계약대출 지급방식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가 선택한 계정의 지급방식(이하, “변경 후 지급방식”이라 합니다) 외에 다른 계정의 지급방식(이하, “변경 전 지급방식”이라 합니다)에 의한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변경 후 지급방식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때 변경 전 지급방식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 전 지급방식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을 변경 후 지급방식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6. 기타

가. 회사는 특별계정 지급방식과 일반계정 지급방식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하고, 계약자는 특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 (1) 각 지급방식에 따른 장단점 등 비교설명
- (2) 각 지급방식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액 지급일
- (3) 각 지급방식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이율

나. 이 특약을 적용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용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없다.

다. 그 외 기타사항은 주계약에 준함